

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

신청인 ○ ○

111111 - 1111111

주소: ○○시 ○○길 ○○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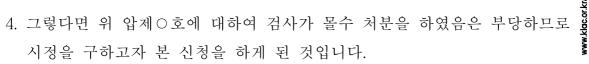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길 ○○번지

신 청 취 지

○○지방검찰청 검사가 ○○지방법원 20○○. ○. ○. 20○○ 고단 ○○○ 상해사건에 관한 벌금과 몰수 선고에 기하여 한 ○○지방검찰청 20○○년 압제○호(가위)에 대한 몰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신청인은 20 ○ ○ ○ ○ ○ 이 방법원 20 ○ 고단 ○ 상해사건으로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2,000,000원 및 ○ 지방검찰청 20 ○ 년 압제 호 내지 제 호, 제 호에 대한 몰수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.
- 2. 위 몰수를 집행함에 있어 검사는 판결 주문 기재의 ○○지방검찰청 압제○호 내지 제○호 및 제○호를 몰수 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, 압제○호(가위)를 몰수 처분하였습니다.
- 3. 위 압제○호(가위)는 사건 전부터 신청인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, 다만 경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참고 품으로 제출하였던 것이 압수되었던 것이므로 재판 종료 후에는 신청인에게 환부되어야 마땅하며 판결주문에도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것입니다.





첨 부 서 류

1. 판결(20ㅇㅇ고단 ㅇㅇㅇ호)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신청인 ○ ○ ○ (인)

				다. K. 대한법률구조공단
제출기관	재판을 선고한 법원(형사소송법 489조)			www.klac.
청구권자	·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· 법정대리인, 배우자	관 할	재판을 선고한 법원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489조	
이의사유	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때	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(형사소송법 491조) ·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(형사소송법 405조)			